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보호 지원 방안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15. 9. 11.(금) 10:30
- 장 소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 11.(금) 10:30 ~ 12:30
- 장 소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5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보호 지원 방안

- 사 회 : 문경주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진 행 : 강동복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 홍성현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보호 지원 방안
- 지정토론자
 - 강동복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송규행 / 前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의장
 - 이찬형 / 천안신당고등학교 교사
 - 고은자 /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자유토론 및 청중토론
- 폐 회

< 자료집 순서 >

■ 발 제

- ☞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보호 지원 방안 7

홍성현(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토 론

- ☞ 교권의 의미와 교육공동체의 권리 15

강동복(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 교권침해의 원인과 실태 22

송규행(前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부의장)

- ☞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 31

이찬형(천안신당고등학교 교사)

- ☞ 교원보호 지원 정책 35

고은자(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발 제

-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보호 지원 방안**
 - 홍성현(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발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보호 지원 방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 성 현

I. 들어가는 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추구하며, 사회나 국가도 개인의 행복 추구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행복이 인간의 본성이고 권리이며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교육에서도 행복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의 학교교육에서는 행복을 그 목적 중 하나로 고려해 본 적이 거의 없다. 교육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는 학력·학벌이 사회적 성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학력을 획득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회적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에서 좋은 학업성적을 얻기 위해 일상의 학교교육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유예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당연시되고 있다.¹⁾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성적은 최상위권이어도 자신감, 학습 흥미도 등은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국제비교 연구에 의하면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²⁾

현 정부가 공교육의 비전으로 ‘행복교육’을 설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 비전 혹은 목표에서 학생을 중심에 위치시켰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는 대체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이나 교육개혁 등을 교육 비전으로 설정했다. 둘째, 국가 경쟁력 제고나 창의 인재 양성 등 거대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는 목표에서 벗어나서 ‘행복’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교육은 우리 교육이 추구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권보호 지원방안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한다.

1) 이해영(2013),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모형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 염유식(2013), 2011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조사결과,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

II. 행복교육과 교권

1. 행복교육³⁾

행복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모습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본 기초발언에서는 관계적 측면의 행복 교육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발언하고자 한다.

가. 행복 교육의 내용

행복교육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교육, 대인관계 기술(관계 형성, 관계 발달, 관계 증진 등), 배려와 존중 등 관계적 내용과 협동의 방법 및 절차 등 사회·정서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초·중·고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부모와 학생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또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해당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행복 교육의 방법

행복교육은 혼자 느끼고 깨닫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따라서 협동학습, 토론 및 토의 등을 통해 타인과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그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정서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때, 학생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고, 협동능력, 의사소통능력 뿐만아니라 학습능력 또한 함양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행복 교육의 시사점

충(忠)과 효(孝)를 기반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와 남을 의식하는 문화 그리고 인간 관계가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관계형성 및 발달과 유지는 중요한 사회적·개인적 가치이자 삶의 의미이다.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는 개인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서양과 다르게 우리만의 특별한 윤리·도덕적인 가치이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를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모와 교사 등의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관계의 장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협동학습, 토론 및 토의의 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김미숙(2013),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 교권

교권이란 ‘교원의 교육권과 교원의 권위’를 함축한 말로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뜻하며 교육자주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포괄적이다.

가. 교육할 권리로서의 교권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

나.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교권

-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 받음
- 신분보장, 불체포특권,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권

다. 인간으로서의 교권

-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함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

3. 행복교육과 교권과의 관계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며 이때 교원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특히 우리의 학교문화 안에서는 교원의 권위가 교육활동에서 아주 중요하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원이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전제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교원이 자신의 지식체계와 가치체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학생에게 교육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혹은 스스로 형성한 권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권위는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원의 권위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⁴⁾ 이러한 교원의 권위, 즉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을 위한 교권보호는 서로가 상생하여 행복한 배움터를 만드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4) 장영란(2003), 교권경시 현상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Ⅲ. 교권보호 지원 방안⁵⁾

가. 교육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교권침해는 학부모의 권리의식의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른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갈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의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법령과 규칙이 준수되는 학교 풍토를 전제로 학부모의 학교방문이나 수업참관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간의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조적 관계로서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침해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주체별 권한충돌은 상호간 권리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라는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권리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간의 권한배분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전략을 활용한다면, 교육주체간에 분쟁과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권이 확립될 것이다.

나. 교원, 학생, 학부모 현장 제정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주체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는 현장 제정이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들이 서로 간에 기대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체벌, 안전사고, 학생지도 등 학교교육과정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분쟁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철저히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각종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학생 교육 등에서 현장에 대한 내용을 책자를 통해 보급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학교차원에서는 입학식 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 및 각 단위 학교별로 마련된 학칙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할 것이며, 학교와 교사는 학생지도, 학부모 민원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 지식 및 교직생활 중에 자칫 잘못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 사례 등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한정수(2010),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다. 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구성 주체들 간 권리침해 또는 갈등문제를 조사하고 조정하는 기구이다.

하지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또한 학교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 학교가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학교도 있고, 더욱이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률·행정·의료분야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 분쟁의 행정 해결제도로써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조정·중재 제도를 도입하여, 교직사회에서 구성원들로부터 권위 및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적 실효성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IV. 나가며

교권과 학생의 권리는 상충되는 것이며 반비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라고 정의 하였다. 교권의 성립 자체가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권은 학습권으로 대표되는 학생의 권리와 대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교권의 본질은 중요한 사실을 나타낸다. 그것은 교권이 학생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만큼 교권의 신장은 학생의 인권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학생인권의 신장도 교권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혼란, 갈등이 생겨나고 이를 조정하고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과 상충’, ‘갈등과 혼란’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⁶⁾

금일 토론회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시행 가능한 것을 충남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불어 사는 교육, 원만한 대인관계,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학생중심의 행복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정기원(2013),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토 론

■ 교권의 의미와 교육공동체의 권리

- 강동복(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교권침해의 원인과 실태

- 송규행(前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의장)

■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

- 이찬형(천안신당고등학교 교사)

■ 교권보호 지원 정책

- 고은자(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토론)

교권의 의미와 교육공동체의 권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운동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강 동 복

1. 들어가는 말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을 통칭하는 단어다.

교육(教育)이란 한자는 맹자(孟子)의 ‘得天下英才而教育之(득천하영재이교육지: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란 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글자의 구성면에서 보면 교(敎)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육(育)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으로 기른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인간이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천성, 곧 타고난 소질과 성품을 보호, 육성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하는 힘’·‘발육하는 힘’을 전제로 하여, 그 자발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조장시켜 자립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의 'education'은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 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교육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 교사와 제자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등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경험자 사이, 혹은 성숙자와 미성숙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인간이란 생명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힘으로, 환경을 통해 이러한 자발적·창조적 가능성이 드러나고 개발되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힘은 후천적으로 성숙자인 양친·교사·선배 등이 이미 계획된 목표와 방향에 따라 미성숙자들을 이끌며, 또는 어떤 목표나 방향의 가능성에 장애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힘이다. 이 두 가지의 힘, 즉 안으로부터의 힘(自力)과 밖으로부터의 힘(他力)이 서로 작용함으로써 교육은 성립된다.

교권이라고 부르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헌법 조항의 의미는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정치적 혹은 그 밖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오직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教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즉 교육권으로서의 교권에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교권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의 권리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신분상의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爭訟) 제기권, 불 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 재산상의 권리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직단체활동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교권의 의미

앞서 광의의 교권의 의미를 보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하는 점을 지적했는데 교권은 교육을 하는 주체와 교육을 받는 주체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의 교권은 교육을 할 권리를 나타내는 바 교육을 받을 주체와 구분된다.

최근 들어 교육을 받을 주체인 학생들의 권리, 학생인권에 대한 교권과의 상관관계가 교권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의 등장으로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가족의 갈등, 갈등으로 인한 집단의 공통가치의 해체, 불신 등 학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교육가족 모두가 피곤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불어 닥친 학생인권조례의 급작스런 등장으로 많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와의 갈등, 수업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학생들의 언행을 접하게

된 교사들의 어려움 호소,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인성교육, 도덕교육, 예절교육의 해체 등은 고스란히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출되는 상황들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 충격적인 사회적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교육의 부재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교육과정 안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결국 국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학교현장에서 찾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제한된 교육과정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느냐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수용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만큼이나 다양해져 가는 학교현장에서의 업무과다는 국가가 학교에게 요구하는 해결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안에서의 프로그램운영의 어려움, 즉 최근에 발생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안전교육, 사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불특정 사건들, 성폭력, 가정폭력, 끔찍한 살인사건 등으로 대두되는 인성교육, 청년실업의 급증, 실업난으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상담)의 필요성,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 발생으로 인한 다문화교육,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등이 교육과정 안에서 모두 이루어져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가를 보았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대로 된 교권의 확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교원의 입장에서 갑작스럽다고 까지 말할 수 있는 학생인권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교권을 학교현장에서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교권 확보라는 일방적 주장을 통해 군사부(君師父)가 하나였던 시절로 회귀하기도 어렵다. 다만 학생인권을 천부인권에 부합하여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무제한의 인권보장은 말 그대로 교육의 어려움내지 비현실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아직 학생들은 완전 인격체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현실에 맞는 학생인권의 인정이 필요하다.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19세부터 인정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인권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에는 제로섬게임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특히 교권과 학생인권이 가장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해법이 앞으로 교육계가 풀어야 할 숙제라 할 것이다.

3. 교육공동체의 권리

교육공동체인 학교(교사), 학생, 학부모는 각자가 지닌 힘(권리)에 대해 무제한적 행사를 요구함으로써 공동체사이에서 영역(힘)을 확대하려고 한다.

간단하게 학교는 교육하는 일, 학생은 교육을 받는 일, 그리고 학부모는 피 교육자에 대한 지원이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고유영역에 대한 권리의 공고화와 그 외 영역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피동적인 위치에 있던 학생들은 학생인권 보급에 따라 권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부양적 위치에 있던 학부모들을 자신의 인권 확대에 끌어드렸다.

학교(교사)는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전통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권리마저 교육을 받을 권리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은 교육공동체인 학교(교사)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교권에 대한 비하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교사집단 스스로 스승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노동집단을 표방함으로써 비뚤었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교육공동체의 한축이었던 교사가 우리 교육의 바탕이던 존중과 존경의 대상에서 스스로 노동자로 자임하며 스승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혼란을 가져 왔고 이는 존경의 대상에서 스스로를 격하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전문직의 자리로 회귀해야 교육공동체로서의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본연의 권리를 확보할 때 교육공동체는 유기적 관계가 유지되지만 어느 일방의 권리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교육 전체에 불균형을 초래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교육은 이처럼 삼각 균형 관계였던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심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진단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권리가 확대된 점(학생인권조례 제정 등)과 비례해 학부모들의 권리는 권리 외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정도로 비대해 지고 있다.

이는 결국 교권의 추락이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권의 축소 내지 하락은 결국 교육공동체간의 권리에 대한 재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하는 일에 전념하던 학교(교사)가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구체화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인으로 교사는 노동자일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는 다른 교육공동체로부터 존경의 대상인 스승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는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4. 교권의 재정립과 인성교육

인성교육이란 개념이 처음 도입 됐을 때 말은 쉬운데 도대체 도덕이나 윤리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이미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교육해온 도덕과목과 윤리과목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먼저 인성이란 동물과 다른 인간의 정신문화적 특성, 즉 ‘사람됨’을 의미한다.

이 사람됨의 본 바탕을 표면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곧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인성 교육은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육을 말 한다. 윤리 교육이나 도덕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가치 체계를 주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야 한다.

인성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주요 방법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가르치는 생각교육이 아니고 관찰에 의하여 개념을 찾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변의 환경,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속에서 관찰을 통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개념의 특성이나 인과 관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성 교육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성질을 밖으로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즉 인성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21일부터 발효된 인성교육법은 이 같은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해 일정시간을 할애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법 제정이전에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를 바랐지만 현실체제에서 입시위주 교육에 밀려 이를 발향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면 내면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워 교권의 확립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5. 맺음말

스승의 은혜가 임금·부모의 은혜와 같다는 의미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는 사전 속의 단어가 된지 오래전의 일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변해가는 사회문화 환경요소들로 인해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직적 관계에 익숙해져 있던 학교 문화가 아무런 대비 없이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며 교사에 대한 재제 수위를 높여 교육적 수업에 몰입해야 하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2년 7971건에서 2014년 1만5000여건으로 3년 새 2배로 급증했다.

이처럼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가 이처럼 신뢰를 잃고 무기력해진 게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안정된 직장에 연금 이 보장된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는 많아도 참스승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의 소리가 작지 않다. 스승은 잘 가르치는 교사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제자의 가슴에 열정의 불을 지르는 위대한 스승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스승이 스승다울 때 제자다운 제자가 있다는 말이 있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교육 일선의 선생님 못지않게 학부모의 노력도 중요하다. 가정은 최적의 인성교육 현장이다. 학부모는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됐다고 개탄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핵가족 확산으로 자녀 과잉보호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학교를 진학의 한 과정으로, 교사를 지식 전달자로 낮춰 보는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최선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교사와 학생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학교와 교육당국, 가정과 사회 전체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더불어 교원이 교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공헌활동을 통해 신뢰를 끌어내고 사회적 인식도 제고해야 한다. 법·제도로 뒷받침하는 교권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교권은 결국 절로 우러나오는 사회적 존경이 바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 헤드(1861~1947)의 말을 소개하면서 말을 맺으려 한다. 그는 교사를 네 부류로 나눴다. 보통 선생은 지껄이고, 좋은 선생은 잘 가르치며, 훌륭한 스승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가슴에 불을 지른다고 했다. 가슴에 불을 지르는 스승이 절실한 때다.

(토론)

교권침해의 원인과 실태

前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의장

송 규 행

I. 들어가며

지난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남, 여학생 모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하지만, 이와는 상반된 결과로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교사비율이 OECD 3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20.1%로 1위이고,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한 비율 또한 36.58%로 3위로 나타났다고 한다.⁸⁾

최근 학교 교원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를 비롯하여, 급변하는 사회 문화에 노출된 청소년 문화 수용,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과정 이해 및 적용,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각종 교육정책 따라잡기, 학부모의 눈높이를 고려한 만족하는 행정 처리, 강도 높은 청렴실천 등 담당해 나가야하는 굵직굵직한 과제들과 씨름하며 생활한다. 일견 이런 일들은 교육전문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고 여겨지지만, 사람을 키우는 매우 특수한 환경을 일일이 고려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인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상처받게 되는 현실이다.

교과지도에서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이 교실의 배움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여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수업혁신을 요구받는다. ‘교실의 혁신은 아이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바꾸는 것’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시대에서 끊임 없는 변화의 파고를 타는 교사들은 피로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업진 데 덮친 격으로 연금개혁 바람에 실려 급기야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서둘러 떠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요동치는 교육현장 속에서 교원들이 겪는 좌절감과 상실감은 2012년 8월에 발표한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시행 이후에도 교권침해사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¹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교권은 교원이 긍지를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실현을 위해서도 지켜져야만 한다.

7) 서울경제, 2015. 2. 22일자 정치,사회면

8) 양정호, OECD TALIS 교수 학습 국제조사 주요 분석결과, 2015.

9) 박현숙, 시흥장곡중 수석교사 ‘교사는 수업으로 성장한다’, 2012.

1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교권강화국이 발표한 2014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당 활동실적 보고서 자료, 2013년 394건보다 2014년에는 439건으로 11.42%p 증가

이에 현재 우리 교단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원인과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교권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II. 교권침해의 원인과 실태

가. 교권침해란?

교육주체자(교사, 학생, 학부모, 국가, 학교설립자 등)들의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한다¹¹⁾. 직접적 원인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당국, 언론 및 사회 등이 직접적으로 교육행위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 원인은 교원의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교육환경을 둘러싼 제 요인에 의해 침해 및 무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교권침해를 넓게 확장하면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교육할 권리나 권위에 침해를 당하면 객관적인 피해 또는 손상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교원의 피해 인식여부에 따라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교직의 특성 상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보다 학습자 보호에 우선적이고 청소년기의 반항과 순간적인 실수로 너그럽게 관용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드러난 교권침해는 실제 발생하는 건수 중의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 교권 침해의 원인

1)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교권침해의 세부적인 원인을 거론하기 전에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가시적인 사회·문화적 문제점을 거론하고자 한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 또한 우리사회가 늘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의 당위성을 말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한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개정한다고 힘을 쏟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미약한 실정이다.

갈등상황의 경위나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자녀의 의견만 듣고 자녀 앞에서 교사를 비난하고 학교에 항의하는 학부모 밑에서는 인성교육이 살아날 수 없고, 공식적인 외부행사에서 교육기관장이 일반 정치가나 행정기관장들로부터 앞좌석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교원의 권위나 교권에 힘이 실릴 리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특별히 교원에게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를 교육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존중하여 자긍심을 부여함으로써 ‘교육 행위’ 그 자체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어깨가 처지고 부정적 사고를 가진 교원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는 없고, 아이들 또한 배움에 매력을 느낄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일등공신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11) 한정수,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방안, 학위논문(석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2010

다른 나라 대통령까지 추켜세우는데 실제로 우리는 ‘학교교육은 없다’, ‘교실이 죽었다’라는 자조를 당연한 듯이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2)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 변화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교육 주체자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에 교원의 교육권의 문제 또한 교원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라는 국가적인 구조 속에서 각 교육당사자의 권한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풀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육 주체자의 개념정립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교육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 규정하면서 교육현장은 완전히 개방체제로 변화였다. 학부모는 교육현장의 큰 중심축으로 등장하여 학교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교원의 교육행위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평관계로 자리 매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교원들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교육주체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학습자와 학부모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서, 요즘 사회에 회자되는 갑을 관계가 적어도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갑이고 교사는 을로 전도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는 종래에 교사를 교육주체의 중심으로 인식하던 것과 달리, 학습자의 적극적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다보니 오히려 교육의 객체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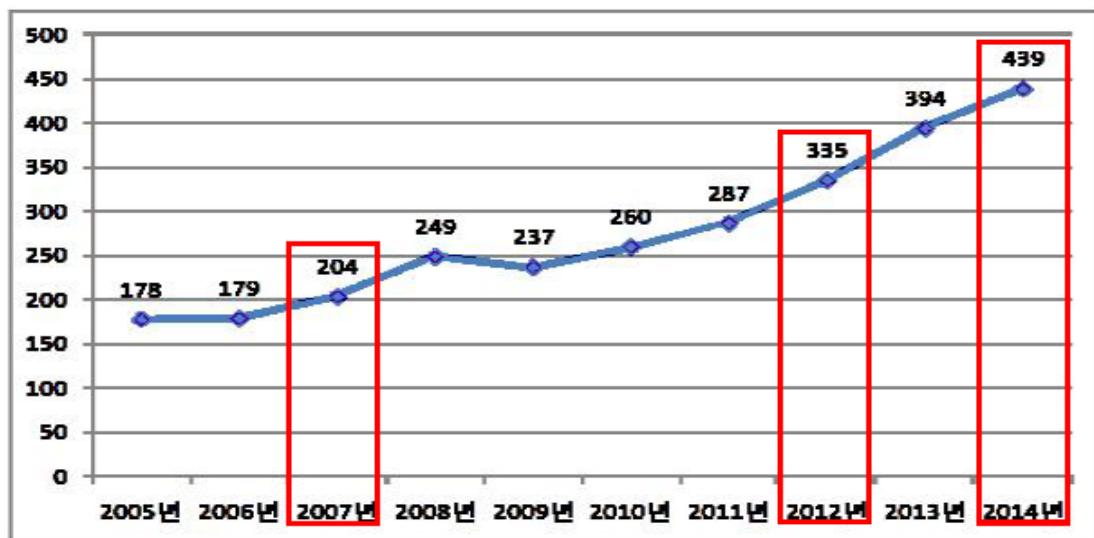
또 하나의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 학교폭력으로 바로 신고가 들어오지만, 학원 선생님이 때리면 아무런 항의가 없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런 현상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겠지만, 그만큼 학교 교육을 가볍게 여기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대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학교는 더욱 힘들다. 공부만 하라고 강조하면 학교가 학원이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공부만 강조할 수도 없다. 안전교육,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화재예방교육, 민주시민교육, 각종 계기교육, 재난대비 대피훈련, 인성교육, 자살예방교육, 다문화교육 등 교과와 함께 또는 교과와 별도로 학교 안에서 교육하고 사후 실적을 보고하는 일련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곳이다. 말로는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부모도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훈육하는 교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은 점만을 찾아서 학생부에 기록해 주어야하고 무조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하는데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에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고3 담임도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대학별 입학전형요소들로 인해 입시지도가 힘들다보니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하향곡선을 그린다.

이 밖에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공교육과 교권 개념에서 인권 요소가 배제된 점을 주목하고 기본권 제한에 따른 교권침해를 주장하기도 한다.¹²⁾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였다. 교육기본권이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보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교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지만 학생의 성장과 발달할 권리는 간과되고 있으며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며 가르치는 대상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 기본권 제한은 현행 법률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교육지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와 맞물리면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 교권침해 실태

교권침해 실태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교권강화국이 발간한 ‘2014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자료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까지 100건대로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2007년을 기점으로 204건이 접수되며 200건대를 넘겼다. 이후 2012년 335건으로 300건대를 넘겼으며 2014년도에는 439건으로 400건대로 진입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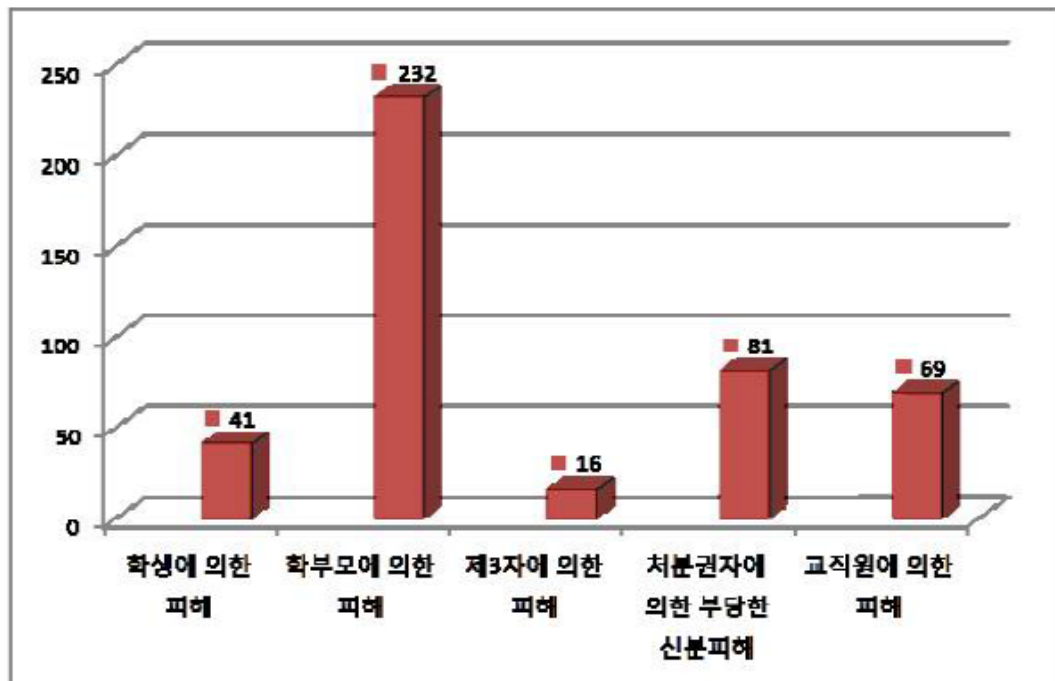


[그림 4]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2014년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처리 현황을 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69건’, ‘학생에 의한 피해가 41건’, ‘제3자에 의한 피해가 1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교권침해 사례를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12) 김언순, 기본권으로서 교권에 대한 논의 -교권보호의 출발점, 한국교육사학 Vol.36 No.1 [2014] p79-114, 한국교육사학회

전체 접수건수는 소폭 상승(11.42%)하였고 그 중 교직원간 갈등.피해가 약 2배(91.67%) 가량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부당행위, 명예훼손,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 학부모, 제3자로부터의 피해가 소폭 상승(10.73%)하였으며 반면 징계, 불합리한 처분, 교육권 침해 등의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는 감소세(-16.49%)를 보였다.



[그림 5]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2014년도에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상담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시행 이후에도 교권침해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11.42%, 394건→439건)하고 있어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면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여전히 높은 비율의 증가세(10.73%, 261건→289건)를 보이고 있다. 학생, 학부모,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에서, 학생은 우발적.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학부모 및 제3자는 교육활동 관련 불만사항에 대해 폭언.협박 후 사직.전근.담임박탈 등을 요구하거나 청와대나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무차별.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육공동체 의식 부족은 물론,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 대한 다각도의 민원제기가 자신의 목적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 전년대비 교권침해 상담사례 증감 현황

(단위: 건, %)

연도별	2013년			2014년				증감률
유형별	사건수		%	주체별	사건수		%	
	수	합계			수	합계		
부당행위	154	261	66.24	학생에 의한 피해	41	289	65.83	10.73
명예훼손	5			학부모에 의한 피해	232			
학교안전사고	51			제3자에 의한 피해	16			
학교폭력 등	51							
신분피해	97		24.62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1		18.45	-16.49
교직원 갈등	36		9.14	교직원에 의한 피해	69		15.72	91.67
계	394		100	계	439		100	11.42

셋째,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2013년도에 비해 91.67%(36건→69건)로 크게 증가했다. 교직원간 갈등은 피해건수가 증가하면서 갈등의 주체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교실 공기질 측정과 먹는 물 검사 등 단위학교내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교원과 교육행정직간의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2년 계약기간 만료 직원에 수당 지급 후 며칠간의 업무인수 인계를 부탁하였더니 해당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식의 계약과 관련한 학교장과 계약직 직원간의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보직에 대한 불만, 학급운영 관련 간섭,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평가와 관련된 갈등, 인신 공격적 발언 등으로 인한 교원과 교원간의 갈등도 나타났다.

라. 교권침해의 유형

교권침해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원침해,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등에 의한 교권침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교권침해 유형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교원에 대한 위협
	•교원에 대한 성희롱	•재물 손괴
	•수업 방해	•사이버 매체 폭력
	•명예 훼손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 · 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 · 고발
	•안전사고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마.교권침해 사례

#1. A교사는 올 초 학부모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 이 학부모는 "학부모가 복도에 서 있는데도 수업 중이라는 이유로 담임이 나와보지 않는 등 불친절하고, 아이가 장애학생이랑 같은 반이 되어서 불쾌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심지어 A4 용지 3~4장 분량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보내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수업을 하는 A교사를 교실 밖 복도에서 몇 시간씩 지켜 보기도 했다.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교장과 교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견디지 못한 A교사는 악몽과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며 학교에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2.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몇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화병이 생길 것 같다. 급우들끼리 가벼운 몸싸움을 한 것을 가지고 한 학부모가 교사의 징계와 교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청·교육부 등에 투서를 일삼았기 때문. 교육청 조사

결과 B교사의 학급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B교사 “이번 일로 교사 생활을 계속해나갈지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3. 교직 경력 3년차인 서울의 한 중학교 C교사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부 학부모들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힘이 빠질 때가 잦다고 했다.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애가 당했으니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에서 학부모가 먼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C교사는 "가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부정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와서 학교에서 교사를 낮춰 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다"며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과 자녀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교권 추락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현주의 일상 토크] "교권 추락? 어제오늘의 일 아냐" 발췌)

#4. 경남 창원에서는 2013년 3월 새 학기 첫날에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다니는 사립 고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력을 휘둘렀다.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아들을 때렸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는 자신이 폭행한 담임교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했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교권 침해의 대표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사건이다

III.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교권확립의 측면에 비중을 두고 교원침해의 원인과 실태를 정리하여 보았다. 사실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은 교원 한 쪽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교권침해의 원인을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보거나 교사의 권리보호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기 쉽고 자칫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어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교원 일방의 권익보호 및 대처방안 등에 치중한 연구들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학교 붕괴현상을 막고 교권을 확립하기 보다는 자칫 교사들의 또 다른 권리행사 요구로만 비추어 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다함께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진정한 학생의 학습권보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권침해 현상은 우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교권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학교교육의 실패 혹은 공교육의 실패로 논의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학교 황폐화 또는 교실 파괴를 거론하며 공교육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나 교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한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학교교육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것밖에 안되느냐고 비판하고 추궁하기 전에 사회가 함께 학교교육을 살피고 교원의 어깨에 긍지를 실어주어 소명감으로 힘껏 땀 흘릴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야 한다. 교권확립 노력과 병행하여 교원 스스로 신뢰회복과 존중받는 교단풍토 조성을 위해 연구하고 사제동행의 미덕을 적극 발휘해야 함을 물론이다. 교원이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할 수 있는 최고 도달점은 학생이 즐겁게 배우는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고 맡기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하는 일이다.

아름다운 천을 짜기 위해서는 씨줄과 날줄이 조화롭게 넘나들어야 하듯 행복한 교육 현장을 가꾸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사, 교사와 관리자 등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당사자 간의 존중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는 대한민국 교원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 한마당을 펼칠 수 있도록 교원의 가슴에 ‘사랑’을 학생의 가슴에 ‘존경’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꿈을 심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운종, 교권보호조례를 통해서 본 교권의 재음미,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0 No.4 [2013], p117-138, 한국교원교육학회
- 김연순, 기본권으로서 교권에 대한 논의 -교권보호의 출발점, 한국교육사학 Vol.36 No.1 [2014] p79-114, 한국교육사학회
- 윤운성, 충남(천안) 교육의 미래,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p14-28, 천안시교육청, 2001
- 장영란, 교원경시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경기도지역 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 한정수,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방안, 학위논문(석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2010
- 홍신기, 주요국의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Vol.14 No.11 [2014] p28-4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 최인재, 교권에 대한 교사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 연구 : 서울특별시 공립 중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2013.
- 대한교육연합회, 敎育과 敎權, 서울: 대학교육연합회, 1997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교권강화국, 2014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2014

(토론)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

천안신당고등학교

교사 이 찬 형

I. 들어가는 말

요즘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이 연도별 교권침해현황을 교육부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교원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가르치고 양성하는 책임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나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하락과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03.18.)으로 학생의 지도 불응이 커짐에 따라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기가 힘든 상황이며,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교권침해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편이다.

저는 오늘 본 토론회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의 인식도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권침해를 경험한 내용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의 각종 인식 조사 관련 연구 발표한 자료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자하며,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이 인식하고 있는 교권보호 노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권침해 현황과 발생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교원의 인식 정도

1. 교권침해의 주체와 수준

보통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를 ‘학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공립학교에서는 교사의 단기근무로 인한 학생과의 유대감 약화와 경력이 적은 여교사의 증가로 인하여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가 많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학부모, 신문과 방송매체, 학교관리자

등으로부터도 교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의 교육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교권침해의 수준은 ‘심각하다’라고 인식되었다.

2. 교권침해의 경험과 분야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학교관리자 및 교육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권침해 경험을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교원이 최근 3년 동안 ‘1-3회’ 정도의 교권침해를 경험하였으며, 공립학교 교사 및 여교사 일수록 교권침해를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남교사보다 여교사를 약하게 보는 성향에서 교육활동 중에 교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반 수 이상의 교사가 ‘학생의 부당행위’를 교권침해가 많은 분야로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 ‘학부모 부당행위’, ‘명예훼손’순으로 나타났다.

3. 학생 교권침해의 형태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형태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불이행’과 ‘수업진행 방해’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였으며, 교직경력이 20년 이상된 교사이거나 부장교사일수록 다른 교사보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불이행’을 학생의 교권침해 형태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20년 이상된 교사나 부장교사는 수업의 경직성과 학생의 정서에 맞지 않는 습관화된 지도방법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권 침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 교권을 침해하는 형태는 ‘언어폭력’과 ‘교사 성희롱’순으로 나타났다.

4. 교권침해의 시기와 발생시간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 ‘1학기 초’라고 높게 인식하는 교사들이 많았으며, 이는 학년 초에 학생의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마찰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여교사는 남교사보다 교권침해 시기를 ‘2학기말’로 높게 인식하였는데 학년말 육체적으로 나약함에 대한 학생들의 이탈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수업시간’과 ‘학생지도 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수업시간 중에 예사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교사가 함부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교권침해의 원인 및 이유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 대해 교사들은 ‘교권경시 사회분위기’와 ‘가정교육 약화’로 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교사에 대한 존경이 낮아짐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로 학생들의 인격수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주된 이유로는 ‘학생 생활지도 불만’과 ‘학교(학급)운영 불만’으로 교권이 학부모에게 침해되는 이유라고 인식하였으며,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이유를 ‘학생 생활지도방식 불만’과 ‘가정교육 약화’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가정교육의 부재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방식에 잘 순응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언행을 표출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6. 교권침해 대처방법 및 사후 대응책

교사들은 교권침해 시 해결해야 할 주체를 학교 내부의 책임이 있는 ‘학교관리자’와 ‘교권보호위원회’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는 ‘동료교원의 자문 및 협조’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다음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름’, 묵인 또는 조치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대책으로는 ‘배상 및 중재제도 도입’과 ‘심리상담 및 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7. 교권침해 시 적극적 대처 곤란 이유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이유’로 덮는 경우와 ‘신분상 불안으로 소극적 대응’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사 및 계약직 교사 등 신분보장이 약한 교사일수록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이 어려워 교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다음 ‘학부모 및 학생과의 신뢰관계 유지’, ‘학교관리자의 조정역할 미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속력 미흡’, ‘교권침해 여부 판단 곤란’ 순으로 교권침해 시 적극적 대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식되었다.

8. 교권보호를 위한 선행조건 및 교사의 교권보호 노력

교사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존중 사회분위기’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가 교사를 무시하는 경향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교직이 비록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교권경시 풍조 및 교원들의 자괴감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전문성 향상 노력’과 ‘교직윤리 확립’ 등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교사 스스로 교과 전문성에 대한 자질 함양이 가장 쉽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것은 ‘학생 등 인성교육 강화’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교육현장의 교권침해의 주요인을 학생들의 인성부재에서 찾았으며,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된다면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Ⅲ. 나가는 글

요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서, 학생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교권이 무너지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권이 침해되면 일차적인 피해자는 교원이지만, 교원들의 교육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모두 신뢰 회복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유지시키는 교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

교권보호 지원 정책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고 은 자

I. 들어가는 말

우리 교육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교육의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 규정하면서 교육현장은 완전히 개방체제로 변하게 되었다. 즉, 학부모가 교육현장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으며, 자녀교육에 관하여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평관계로 규정한 것이다.¹³⁾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교육주체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학습자와 학부모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서, 교사는 교육주체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객체로 인식함으로써 교육의 측면을 지원하는 서비스공급원 정도로의 역할로 권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급격히 변해가는 권한 구조는 교육주체별 권한 충돌로 이어져 현재 한국의 교육현실은 교권 추락 및 교실붕괴로 말미암아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교권침해에 대한 유형과 침해 정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권 침해에 따른 교권붕괴 현상은 심각한 위기적인 현상이며, 최대 현안이자 난제로 떠올랐다.¹⁴⁾

교육부는 2013년「교권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교권침해로 인해 저하된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I. 교권보호 지원 정책

1. 비전과 과제

학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은 건강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였다.

13) 하운수(2000), 현행교육법상 교육주체 개념을 둘러싼 교육권의 재검토, 대한교육법학회

14) 한정수(2010),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 쟁점 분석과 교권보호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과제	교권 침해 예방	관리 및 지원	교권침해교원 치유
	●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연수 - 교권보호매뉴얼 배부 ● 교육주체별 권리 이해 ● 소통을 위한 운동 추진 - 114 공감나누기 운동	●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 고문변호사지원 ● 3코스 지원 프로그램 - 상담, 방문, 집중치료	● 치유캠프 운영 - 피해교원 및 피로누적교원 등 참여 - 7월/10(11)월 예정

<그림 1> 교권보호 정책의 비전과 과제

2. 교권침해 예방

교육활동은 교원과 학생간의 지속적인 정보의 교환, 가공,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많은 학생들과 교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교권침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 교권침해 예방 연수

학기 초에는 초면인 상태에서 학생과 교사 간에 내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극대화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관심과 적응의 과정은 교권침해 사례가 1학기에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학기 초인 3월에 교원의 교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교권위본 실천을 위한 교권보호매뉴얼’과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교권과 교권보호의 개념, 교권침해 사안별 처리 절차, 교권침해 유형별 사례를 안내하여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6조와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교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교원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이수하고 있는 직무연수 과정에 교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충남교육연수원 주관으로 마곡사 주변 한국문화 연수에 위탁하여 ‘숲에서 치유교육을 만나다’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 표1 > 교권보호 관련 직무연수 현황

순	연수 과정	연수 시간	연수 형태	이수 인원
1	분노조절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정신건강 상담지도)	30	원격	25
2	화를 다스리는 감성코칭(분노조절 상담지도사)	30	원격	32
3	대한민국 자존감 프로젝트(행복한 학생만들기)	30	원격	15
4	김창옥의 FOUR FREE, 소통을 통한 행복충전	30	원격	55
5	욱! 하는 성질 다스리기	60	원격	10
6	교권보호	30	원격	43
7	숲에서 치유교육을 만나다.	15	출석	120

나.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에 대하여 존중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는 자율 연수를 운영하였다.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교권과 교권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표2 > 교육주체별 권리이해 연수 자료 내용

교육주체	내 용	비고
교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어·기·역·차' 대화법 학생들에게 힘을 주는 말 VS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말 화를 다스리는 기술 체벌과 교권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의 약속	
학생	교권관련 법령과 교권존중 이유 교원침해란? 교권침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권보호에 대한 학습자료 교권을 침해하면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Q&A)	
학부모	교권에 대한 이해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교권침해의 의미와 교권침해 행동 유형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방법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다. 행복한 학생을 위한 114 공감 나누기 운동 전개

신학기에 1명의 학생에 대해 1달에 4번 담임교사와 통화(상담)하기

학생이 자기 부모님과 선생님이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학기 초에 실시하고 있는 상담 및 가정방문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3. 교권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시스템 활성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과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과 교원치유지원센터 3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교원인사과에 구축하여 교권침해 사안발생시 상담, 사안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표3 > 교권보호 지원센터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전화번호	비고
센 터 장	교원인사과	교원인사과장	041-640-7300	센터총괄
부 센 터 장	교원인사과	교원단체담당장학관	041-640-7320	센터운영
지 원	교원인사과	담당 장학사	041-640-7331	현장지원
지 원	교원인사과	담당 주무관	041-640-7332	사무처리
지 원	학생생활교육과	변호사	041-640-7629	법률자문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상근 변호사를 두어 교권침해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생활근거지에서 쉽게 법률자문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교원이 많이 거주하는 천안, 대전, 홍성지역에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4 > 교권보호지원센터 법률상담 지원 위촉 변호사

성명	전화번호	팩스	주 소	위촉 기간
박주○	042-472-47○○	042-472-47○○	대전시 서구 문예로 73 변호사회관	2014.01.01. ~ 2015.12.31.
김종○	041-565-33○○	041-565-3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원2길 40	
장언○	041-633-60○○	041-633-46○○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교권침해 관련 사안 조사를 위하여 인사담당 장학관 2인과 사안담당 장학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5 > 교권 침해 사안 조사 전담인력 운용

구분	소속	직위	담당 업무	전화번호	비고
초등	교원인사과	장학관	초등인사담당장학관	041-640-7320	초등총괄
	교원인사과	장학사	초등사안담당장학사	041-640-7325	사안처리
중등	교원인사과	장학관	중등인사담당장학관	041-640-7310	중등총괄
	교원인사과	장학사	중등사안담당장학사	041-640-7313	사안처리

교권침해 교원의 심리적 치유 및 상담을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 실장과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총 6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 표6 >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꿈그린센터)

소속	직 책	인원	역 할	비 고
학생생활 교육과	실 장	1	운영·관리 총괄 지역사회협력	■ 충청남도 ○○시 ○○구 ○○7로 37-8 ■ 연락처: 070-4917-75○○
	전문상담사	4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	1	사례배정 및 행정	

나. 교원치유지원센터 3코스 프로그램 운영

교권침해 교원의 심리적 치유 및 상담을 위하여 3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코스는 피해교원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2코스는 야간에 방문하여 상담 심리검사 및 간단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코스는 1박 2일 집중치료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3코스는 희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1코스 전화상담으로 심리적 으로 안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4개월간 장기 전화상담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어려움까지 극복한 사례가 있다.

< 표7 > 교원치유지원센터 3코스 프로그램 운영

구분	1코스	2코스	3코스
운영시간	상시	야간 방문상담	1박 2일(주말)
방법	전화 상담	센터 방문	집중치료
지원내용	피해교원 전화상담	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 1~2가지	상담, 심리검사, 치료프로그램, 동료, 가족 등 동반 입소 치료

4.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 캠프 운영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권침해 피해 교원과 피로누적 교원에게 치유 캠프를 운영하여 심리적 위안과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숲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족도 높은 치유(힐링) 캠프를 운영하였다.

< 표8 >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 캠프 운영

순	일 시 (장 소)	운 영 내 용	운 영 결 과
1	'15.7.15~7.17 (숲체원)	- 숲오감체험 - 숲치유지원프로그램 (수치유, 열치유, 산림치유등) - 숲속 명상	교원 40명 운영
2	10월말(11월초) 추진	교원 40~50명 예정	도내추진

III. 나가는 말

교권침해가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의정토론회가 이루어진 것은 교권 의보호와 존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다.

교권은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고 교사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성숙한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배려, 노력, 절제를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교권은 교육주체자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의정토론회를 통하여 교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이를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